

# 사후모니터링

## 01. 사후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 1.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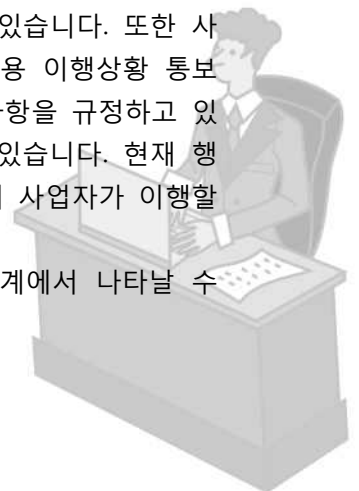
유엔환경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교육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링과 감사는 프로젝트가 수행됨에 따라 어떤 영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예측된 범위로 제어될 것인지,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치 못했던 영향들이 조절되거나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획의 주기적 검토와 변경을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최선의 행위를 통한 환경보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도 사후감시와 감사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환경청에서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행 모니터링, 효과 모니터링, 확인 모니터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행 모니터링은 여러 저감방안이 적절히 이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효과 모니터링은 저감방안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이며, 확인 모니터링은 잠재적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모델과 도구들의 정확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규제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 조사로 구분됩니다. 협의내용 관리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승인기관, 사업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의 실제적 영향을 조사·확인함으로써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영향의 발생에 대한 저감수단의 보완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결과를 실제로 검증하는 중요성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내용 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 항목별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일련의 작업을 사후관리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 이행상황 통보 의무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및 통보,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사후관리는 협의절차 이후 사업시행의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에서 사업자가 이행할 사항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착공 후와 운영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간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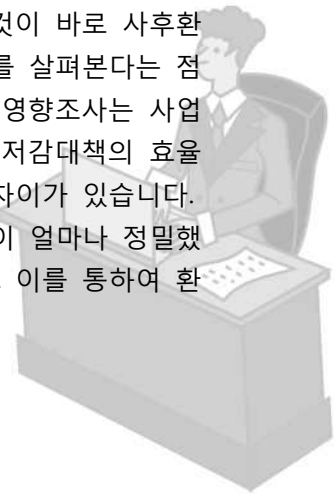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기간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사기간이 구분됩니다. 운하사업, 발전소개발, 어항 및 항만시설, 댐·저수지건설사업, 공항건설,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및 온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 사업 착공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도시개발사업, 도시주거 정비사업, 주택조성사업, 화물터미널 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착공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완료 후에는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내용 중 환경질의 측정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등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주체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시기는 조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기능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개발행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업 전과 후 전 과정에서 최소화시키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영향조사란 특정 개발행위로부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현황조사이며, 사업 대상지역의 사업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예측된 일련의 결과들이 예측치이고, 다양한 계획기법을 적용하여 예측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를 저감대책의 수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측된 환경평가의 결과가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정도, 규모, 원인 요인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환경평가제도에서 사후관리를 환경평가 절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부분은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점검과 환경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는 환경보전적 측면과 협의내용 관리와 같은 행정 절차적 측면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후관리 분야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후환경영향조사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대상지역의 현재 환경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환경영향조사에서의 환경현황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후에 이루어진다는 시기적 차이점과 사업 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시켰던 저감대책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환경현황조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 영향이 얼마나 정밀했으며, 그에 대응한 저감대책이 얼마나 적합한 지에 대한 해답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하여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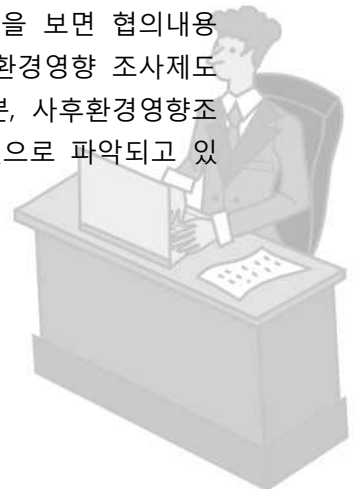
경평가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 최소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후 대상 지역의 환경현황이 사업 전 예측하지 못한 영향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 상태와 정도, 양상에 따른적합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대책수립 사후환경영향 파악 저감대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조치의 절차를 이루는 과정까지를 전체 환경평가과정의 최종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협의의 의미에서 개발사업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유도라는 제도 운영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평가됩니다. 반면에 보다 광의적 측면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개발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그 주변지역 내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유사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친환경적 국토개발과 환경관리를 선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친환경적 개발사업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로서 사업 전 현황조사 보다 엄밀한 조사 설계와 수행이 요구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그 주체가 사업자로서, 조사 시기는 착공 이후에 시행되는 환경현황조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통하여 예측된 환경영향에 적합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전 환경관리 수단으로, 사업 착공 이후 실제로 발생한 환경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예측된 사항을 사후평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는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수행되었거나 예측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감시 도구로서 작용합니다. 계획 시 수립한 목표기준이나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의 발생을 감지하고 그 대응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환경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수행되는 제도로써 환경부 고시 및 예규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법적 규정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에 관한 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간 및 시간적 범위로서 주변환경의 피해 범위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규정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현장에서의 환경 분야 담당 관리책임자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환경관리 예산이나 현장 운영 여건 상 관리책임자가 의무배치 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의 서식을 보면 협의내용 이행 중심의 작업장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서식을 보이고 있어 현재 사후환경영향 조사제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을 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평가제도 전반에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1. 최재용 외(2006). 환경영향평가론. 에코시티사업단
2. 최희선 외(2013).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3. 박영민 외(2011).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4. 전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011).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  
(「환경성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샵」 발표자료)

